



근로자 지원

출산·육아 지원정책
바로가기



육아휴직
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

육아휴직 급여

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 지원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

6+6 부모육아휴직제

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~450만원)

* 부모 모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
→ (1개월) 월 상한 200, (2개월) 250, (3개월) 300, (4개월) 350, (5개월) 400, (6개월) 450만원

구분	지원요건 등
육아 휴직	① 육아휴직 개시에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
육아휴직 급여	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일·육아 동행 플래너

- 서울고용센터 02-2004-7339
- 대전고용센터 042-480-6021
- 서울서부고용센터 02-2077-6056
- 인천고용센터 032-460-4672
- 서울강남센터 02-3468-4861
- 서울관악고용센터 02-3282-9366
- 부산고용센터 051-860-2083
- 수원고용센터 031-231-7840
- 성남고용센터 031-739-4945
- 대구고용센터 053-667-6038
- 서울동부고용센터 02-2142-8454
- 광주고용센터 062-609-8657
- 서울남부고용센터 02-2639-2413

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

사용 기간 및 시간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1년,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,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~35시간이 되도록 단축해야 함

* 예) 1일 8시간,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
1일 1시간 ~ 5시간까지 단축 가능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(고용보험법 제73조의2)

주당 10시간 단축분

통상임금의 **100%**
상한액 200만원

나머지 단축분

통상임금의 **80%**
상한액 150만원

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

-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(다태아 120일)의 출산전후·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되어야 함(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5~90일 범위)
- 「근로기준법」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를 지급

구분	최초 60일	마지막 30일
우선지원 대상기업	정 부_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사업주_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(최대 210만원)
대규모 기업	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(최대 210만원)

배우자 출산휴가

-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 청구 시 사업주는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 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, 1회 분할사용 가능)

구분	최초 5일	나머지 5일
우선지원 대상기업	정 부_ 5일분(상한 401,910원)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 보험에서 지급 사업주_ 최초 5일분의 통상 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 지급	사업주가 5일분(통상 임금 100%) 지급
대규모 기업	사업주가 5일분 (통상임금 100%) 지급	사업주가 5일분(통상임금 100%) 지급

가족돌봄휴직·휴가

가족돌봄휴직

근로자가 가족의 ①질병, ②사고, ③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90일간 휴직 신청가능 (무급, 분할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, 근속기간 포함)

가족돌봄휴가

가족의 ①질병, ②사고, ③노령 또는 ④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10일간 가족돌봄휴가 신청가능(무급, 1일 단위 사용 가능, 근속기간 포함)



일자리+

일과 가정의 양립

일·육아동행 플래너와 함께하세요!



고용노동부

"일·육아동행 플래너"

기업에서 일·육아지원 제도를
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
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



1:1 맞춤형 기업 지원

- 기업 분석 및 진단**
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(메일) 등을 통한
기업 상황 진단
- 맞춤형 설계·지원**
기업 상황 및 요구 수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
구분하여 1:1 맞춤형 서비스 지원
- 1수준** 임신~육아까지 근로자·사업주 지원제도 및 법적 의무
사항 설계, 지원금 신청서 작성 지원 등 안내·상담·지원
- 2수준** 심층적인 설계·진단 필요시 지방관서 자체 외부
전문가(공인노무사 등)를 매칭하여 지원
- 3수준** 운영 설계 및 규정 마련, 시범 운영 등 전반적·체계적
지원이 필요한 경우 '일터혁신컨설팅' 등과 연계



기업 지원

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 (정액)

육아휴직 지원금

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
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특례* 3개월 동안 월 200만원)

* 만 12개월 이내(임신중포함),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
월 200만원, 이후 월 30만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
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1~3번째 사례 월 40만원)

대체인력 인건비 및 알선 지원

대체인력지원금

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,
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
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(인수인계 2개월, 월 120만원)

채용알선

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
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

* 커리어넷, 스카우트, 제니엘, 지에스씨넷, 동래·창원·울산 여성인력
개발 컨소시엄 등 5개소

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
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)
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
-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,
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, 25시간 이하,
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,
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(별도 수당 등)

유연근무 종합 컨설팅

- 유연근무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
지원, 기업당 인사노무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후
컨설팅 진행(1개소 당 약 12주)

- 기업 진단·분석(1~2주)
- 인사·노무제도 설계(3~5주)
- 정부지원제도 안내·신청(3~8주)
- 인사·노무제도 개정 마련, 인프라 구축(7~8주)
- 시범운영(9~10주)
- 사후관리(11~12주)

-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범위, 인사·노무관리 체계
구축, 기업 희망 시 IT 인프라 구축 등 컨설팅 지원

일·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

-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이 유연근무 활용 또는
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·사용하는 인프라 투자비용의
일부를 지원

근태관리 시스템
+정보보안 시스템,
투자비용의 50%,
2천만원 한도 지원

재택·원격근무

근태관리시스템,
투자비용의 70%,
750만원 한도 지원

유연근무
재택·원격·시차·선택 등

출산·육아 지원정책
바로가기



유연근무 지원정책
바로가기



유연근무 장려금

-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유연근무의 실질적
활용 유도
-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
30만원 지원

유형	1개월 지급액(활용일수)		최대 지급액
재택·원격근무	15만원 (월 6일~11일)	30만원 (월 12일 이상)	360만원 (1년)
시차출퇴근 (육아기)	10만원 (월 6일~11일)	20만원 (월 12일 이상)	240만원 (1년)
선택근무	30만원(월 6시간 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	360만원 (1년)

*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근무에 대해 10만원 추가 지원

워라밸일자리 장려금 (소정근로시간 단축)

- 근로자가 가족돌봄,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
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
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

-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,
- 근로자 신청에 따라
주 15~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,
- 전자·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,
-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,
- 단축 최소 1개월(임신사유 2주)이상 단축

- 장려금(월 50만원)을 단축
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

